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01

전기수용설비 2,000kW인 취수장을 자동화하여 무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자가용전기설비는 자동화 등으로 무인운영하여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2. 02)

02

군인아파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으로,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군인)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군시설의 운용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완화한 것입니다.
- 군인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호에 의한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로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2)

03

전기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및 장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지

- 전기감리업과 전기설계업은 별도의 확보가 필요없이 중복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5)비고5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이 포함되므로 기준에 해당하면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의해 등록을 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기준에는 전기감리업에 등록된 기준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대행사업자 등록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규모에 따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개소를 제한하여 가중치 한계를 60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감리업과 설계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은 1인당 정해져 있는 장비를 항시 휴대하여 순회 점검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업무 형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6. 17)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01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으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건축전기설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 발주자가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자격을 별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0. 17)

02

건축사 설계업무에 전기, 통신부분 설계가 포함되는지 및 만약 포함된다면 입찰 공고시 전기설계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 수 있는지

-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7)

03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8. 08)

04

공사진행중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감리원의 설계변경 보고를 받아 발주자가 설계변경 승인을 하였을 때에, 설계변경의 설계자 및 검토자는 누가 되는 지

- 전력시설물공사 진행중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1. 21)

생활속 법령상식

타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는 ...



글 _ 박종복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본인은 A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A에게 매달 토지임대료로 100만원을 지불하여 왔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A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토지인도 및 본인 소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다. 대책은? 단 토지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만료시에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였었다.

A 타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소유자 즉 토지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관계가 곧바로 성립하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설사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만료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은 효력이 없다. 지상물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감정가격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글 | 정태화 세무사

1.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임차료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①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이하
-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 5천만원 이하
- ④ 기타지역 : 1억 4천만원 이하. ※ 월차임 환산액 : 월차임 × 100

나.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은 ①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②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권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③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까지

④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⑤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 인상 한도가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5% 이내로 제한된다.

다. 임대인의 권리는 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2%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②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씨는,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원 (건물가액 10억원 + 부가가치세 1억원 + 토지가액 3억원 - 보증금 8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러니 잔금일 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김 재산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에는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한 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양수 후 양수한 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도·양수를 인정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한 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한 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김 재산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 재산씨는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한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수한 자에게 교부하고, 양수한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므로 잘 대응하여야 한다. ❖

01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검정시행일정

등급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 실기(면접)시험 원서 접수 (인터넷)			
기술사	제84회	1.18~1.24	2.17	3.31	3.31~4.3	4.26~5.8	6.2	
	제85회	5.2~5.8	5.25	7.7	7.7~7.10	8.2~8.13	9.8	
	제86회	8.1~8.7	8.24	10.6	10.6~10.9	11.1~11.13	12.8	
기능장	제43회	3.7~3.13	3.30	4.11	4.14~4.17	5.17~6.6	6.23	
	제44회	6.20~6.26	7.13	7.25	7.28~7.31	8.23~9.12	9.29	
기사 (산업기사 · 전문사무)	제1회	1.25~1.31	3.2	3.14 (3월18일 제외)	3.17/3.19~3.21	4.19~5.2	6.2	
	제2회	4.18~4.24	5.11	5.30	6.2~6.5	7.5~7.18	8.18	
	제3회	7.4~7.10	7.27	8.14	8.18~8.21	9.27~10.10	11.10	
	제4회	8.15~8.21	9.7	9.26	9.29~10.2	11.1~11.14	12.15	
기능사	제1회	1.18~1.21	2.3	2.22	1차: 2.11~2.13 (필기시험 면제자 대상) 2차: 2.25~2.27 (당회 합격자 대상)	3.22~4.4	4.29	
	제2회	3.7~3.13	3.30	4.11	4.14~4.16	5.17~5.30	6.23	
	제3회	전문계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일반 필기시험면제자는 해당하지 않음				5.13~5.15	6.14~6.29	7.21
	제4회	6.20~6.26	7.13	7.25	7.28~7.30	8.23~9.5	9.29	
	제5회	9.5~9.11	10.5	10.17	10.20~10.22	11.22~12.5	12.29	

【유의 사항】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간 : 해당 발표일 13:00
※ 단, 기술사의 경우는 00:00
- 최종합격자 발표시간 : 해당 발표일 00:00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별 · 회별 · 시행종목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알 림】

■ 수험원서 접수

가.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나.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다.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필답)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부	시험시간	비고
기술사	-	08:30 ~ 17:20	※입실시간 기준 ※기사, 산업기사(전문사무)인 경우는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기능장	2부	11:00 ~ 12:30	
기사	1부	09:00 ~ 제한시간	
산업기사(전문사무)	2부	13:00 ~ 제한시간	
기능사	1부	09:00 ~ 10:30	
	2부	11:00 ~ 12:30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인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www.Q-net.or.kr [자격검정업무-응시자격서류심사안내] 참조

※ 응시자격이 학력일 경우에는 공단에서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 제출하실 수 있음(추후 동일직무분야에 응시할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
 -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마지막날은 18:00까지 임(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간 임)
 -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사항 사전 공고 종목에 대해서는 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장소를 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째주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은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가.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수수료 환불은 www.Q-net.or.kr을 참고하기 바람
 - 다.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
 - 라.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바.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 사.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아.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자.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02

협회 · 우리은행 제휴 신용카드 발급 안내

지난 2007년 11월 28일 협회 이희평 회장과 우리은행 박영호 부행장은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Family(회원) 신용카드 발급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카드명칭**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Family카드

■ **발급대상** : 협회 회원 및 직원(중앙회의 확인 후 발급)

■ **카드 발급기관** : 우리은행 우리카드

■ **카드 구분** : BC - VISA CARD

■ **Family카드의 서비스 내용**

- 협회비 할인 서비스 : 최근 3개월 국내가맹점 신용구매 30만원 이상 이용시 협회비 연1회 10% 최대 9,000원 할인, 이용대금 청구시 차감청구, 가입 후 1년간은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서비스 : 발급후 5년간 기본(5,000원) 및 별도(2,000원)연회비 면제, 6년차 부터 최근 1년간 신용구매액 3백만원 이상시 익년도 연회비 면제
- 후불교통카드 기능 : 희망시에 한함
- 모아포인트 0.2% 적립서비스 : 신용구매 이용액 정상결제시 1,000원당 2포인트 적립
- 주유할인서비스 : 최근 3개월 신용구매(GS칼텍스 구매분 제외) 30만원 이상시 GS칼텍스 주유 1당 60원 할인(1일 2회, 월4회, 최대 10만원), 차감청구
- 차동차 관리 서비스 : 무료 긴급출동 및 차량점검(24종) 서비스
-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 : 카드 가입 승인일 익월 15일부터 1년간 제공
-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 롯데 · 신세계 · 현대 백화점과 할인점(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 전국 주요 의료기관(가맹점)
- 통신요금 2건이상 자동이체시 매월 1,000원 할인 서비스
- 외식 할인 서비스 : 주요 패밀리레스토랑 10%할인 (월 1회, 월 최대 1만원), 씨즐러 20%할인 (1일 1회, 1회 최대 2만원, 주류제외)
- 영화 할인서비스 : CGV · 메가박스 · 롯데시네마 동반자 1인포함 1인당 3,000원 할인, 차감청구, 인터넷 예매 제외
-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
 - 롯데월드 · 서울랜드 · 우방랜드(대구) · 경주월드 · 꿈돌이랜드(대전) : 본인 무료입장 또는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 에버랜드 :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 통도환타지아(부산) · 패밀리랜드(광주) : 입장료 할인(차감청구)
 - 전주동물원 : 본인 무료 입장(현장 할인)
- 전국 주요 콘도 할인 예약 서비스 : 정상가 대비 최고 72%할인 혜택

■ **제휴카드 신청방법**

- 중앙회 및 지회에 비치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회 또는 중앙회 총무경리팀으로 제출
- 협회의 각종 교육 또는 행사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03

2008년도 전기감리·설계교육 실시안내

1. 교육대상

- 전기설계·감리업체에 근무하는 전력기술인
- PQ(사업수행능력평가) 교육점수를 받고자 하는 자
- 공무원 교육가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승인 후 인정)
- 본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자년

2. 교육일정 및 장소

- 전기감리기술교육

전기감리교육 1과정			전기감리교육 2과정						
실시기간	지역	비고	실시기간	지역	비고				
3/3~3/7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3/24~3/28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4/21~4/25			3/31~4/4						
5/26~5/30			5/19~5/23						
6/16~6/20			6/9~6/13						
6/23~6/27			7/7~7/11						
9/1~9/5			8/25~8/29						
9/8~9/12			9/22~9/26						
10/13~10/17			10/20~10/24						
10/27~10/31			광주			비합속	10/27~10/31		
11/3~11/7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11/3~11/7	대구	비합속
11/10~11/14	대전	비합속	11/10~11/14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11/17~11/21	부산	비합속	11/17~11/21						
11/24~11/28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11/24~11/28	광주	비합속				
12/1~12/5			12/1~12/5	부산	비합속				
12/8~12/12	대구	비합속	12/8~12/12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	-	-	12/15~12/19	대전	비합속				
3/10~3/14	오산 롯데 연수원	합속	3/17~3/21	오산 롯데 연수원	합속				
3/31~4/4			4/14~4/18						
6/9~6/13			6/16~6/20						
6/30~7/4			6/23~6/27						
7/7~7/11			7/14~7/18						
7/21~7/25			7/28~8/1						
8/4~8/8			8/18~8/22						
8/25~8/29			9/1~9/5						

- 전기설계기술교육

전기설계교육 1과정			전기설계교육 2과정		
실시기간	지역	비고	실시기간	지역	비고
8/18~8/22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10/6~10/10	중앙회 협회 교육장	비합속
3/3~3/7	오산 롯데 연수원	합속	3/24~3/28	오산 롯데 연수원	합속
11/10~11/14			12/1~12/5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가·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별 교과목

◎ 전기감리전문기술교육

전기감리교육 1과정		전기감리교육 2과정	
교육과목	시간	교육과목	시간
SPRS 감리보고서 작성기법	2	소양교육	2
전력기술관리법령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5	정보통신설비 공사감리	4
전기설비보호 및 접지시스템	4	KSC IEC 60364해설(건축전기설비)	5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4	KSC IEC 62305해설(피뢰설비)	3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현장실무	5	배전설비 공사감리 전문기술	4
수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공사감리	4	전기계측장비 및 계전기 점검요령	3
구내배전설비의 설계도서검토 및 공사감리	4	전기철도 공사감리 전문기술	4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3	송전설비 공사감리 전문기술	4
수행평가	1	변전설비 공사감리 전문기술	3
-	-	수행평가	1
계	35	계	35

◎ 전기설계전문기술교육

전기설계교육 1과정		전기설계교육 2과정	
교육과목	시간	교육과목	시간
소양교육	2	KSC IEC 60364해설(건축전기설비)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5	전기철도 설계기술	4
수전 및 구내배전설비 설계기술	5	송전설비 설계기술	4
전기설비 기술계산	5	KSC IEC 62305	5
전력기술관리법령	3	방재설비설계기술	3
전력설비 설계실무	3	배전설비 설계기술	4
정보통신 설계기술	3	정부계약제도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
발·변전설비 설계기술	4	전기품질향상대책 및 접지시스템	3
조명설비 설계기술	4	프랜트 및 제어설계 기술	3
수행평가	1	수행평가	1
계	35	계	35

4. 교육비 안내

- ◎ 비합숙 : 210,000원(중식 및 숙식비 포함되지 않음)
- ◎ 합 숙 : 240,000원(중식 및 숙식비 포함)

5. 교육접수 및 교육비

가. 인터넷 접수

-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서 온라인 민원업무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을 통하

여 로그인 후 접수

- ◎ 온라인 접수 후에 반듯이 교육위탁계약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FAX(02-581-4256)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관리규정에 의한 정상회원 및 당해 업등록보유기술인력 전원이 정상회원인업체만 온라인 민원업무 서비스를 이용가능 함
- ※ 교육 수수료 후 노동부에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회사)카드로 결재를 하여야 함
- ※ 카드 결제시에는 별도로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나. FAX 접수

- ◎ 노동부지정양식인 교육위탁계약서[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메인창 하단의 전력기술교육원에 있음] 작성하시고 중앙회 지정 은행 계좌에 교육비 입금 후 입금증과 교육위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FAX [02]581-4256] 송부 접수함
- ※ 은행계좌번호 : 142-04-113066(우리은행, 예금주: 한국전력기술협회)
- ◎ 교육신청 후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전화[02]2182-0781~5] 확인

6. 교육 취소 및 변경

가. 교육 취소에 따른 위약금

- ◎ 교육신청자가 교육실시 2주전에 신청교육의 취소통보와 함께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비의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환불할 수 있으며, 2주경과(교육실시 13일 전부터) 또는 이미 신청한 교육이 실시된 이후의 경우 교육취소와 함께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신청 당해연도까지는 납부한 교육훈련비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
- ◎ 환불신청서는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에서 다운로드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팩스[02]581-4256] 전송

나. 교육 변경

- ◎ 교육개시 5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온라인(인터넷)에서 교육일정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위탁계약서를 재출력하여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팩스[02]581-4256] 전송

7. 기타

- ◎ 본 교육을 수료시 PQ 교육 가점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소속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은 본 교육 수수료 후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납부한 교육비의 최대 50% 정도의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04

2008년도 상반기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실시안내

1. 관련근거

- 시행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www.keea.or.kr 법령안내참조]
- 벌칙조항 : 전기사업법 제108조 2항 7호

2. 교육주기 및 대상

교육 과정	교육 주기	교육 대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I)과정	3년마다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으로서 선임된 지 5년 미만인 자 •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II)과정	3년마다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으로서 선임된 지 5년 미만인 자 •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특별과정	최초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원으로서 최초 선임된지 6개월 미만인 자 •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

※ 2005년도까지 교육을 수료한자는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을 수료

3. 교육과정별 교과목

과정	교과목	과정	교과목
공통	전력기술관련법령집	(I)과정	전기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수변전설비 안전관리실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자세	(II)과정	전기품질향상대책 및 접지시스템
	교육 평가		신재생에너지의활용과 에너지Sav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교육시간 : 21시간 ▶ 공통은 과정별 공통과목 		특별과정	전기계측장비 사용 및 계전기 점검요령 전기설비안전관리 실무

4. 교육과정별 실시 일정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과정

(음영이 처리된 ★는 오후 1시 30분 교육시작)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남서	3/17~3/19	협회 중앙회	대전	5/14~5/16	대전상공회의소
	북동	4/14~4/16	협회 중앙회	경기북	4/28~4/30	의정부예술의전당
	북서	*5/28~5/30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전북	6/17~6/19	전주중소기업지원센터
	남동	*6/11~6/13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대구	5/21~5/23	대구문화예술회관
	남서	7/14~7/16	협회 중앙회	부산	5/7~5/9	사학 연금관리공단
경기	4/22~4/24	군포문화예술회관	광주전남	6/24~6/26	광주여성발전센터	
충북	6/24~6/26	청주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남	4/1~4/3	수원농민회관	
-	-	-	계	14회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I)과정

(음영이 처리된 ★는 오후 1시 30분 교육시작)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북동	*3/12~3/14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충남	3/25~3/27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북서	*4/16~4/18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충북	3/11~3/13	청주중소기업지원센터
	남동	4/22~4/24	협회 중앙회	대구	3/26~3/28	대구문화예술회관
	남서	5/14~5/16	삼성동 코엑스	경북동	3/25~3/27	포항1대학
	북동	6/9~6/11	협회 중앙회	경기남	5/14~5/16	수원농민회관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북서	*7/2~7/4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부산	4/15~4/17	사학 연금관리공단
경기	3/18~3/20	군포문화예술회관	울산	7/8~7/10	사학 연금관리공단
	7/15~7/17	군포문화예술회관	울산	5/ 7~5/ 9	울산 가족문화센터
인천	4/15~4/17	인천건설기술교육원	경남	3/5~3/7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6/24~6/26	인천건설기술교육원		7/2~7/4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기북	3/11~3/13	고양시(미정)	대전	6/10~6/12	대전상공회의소
강원	5/20~5/22	강릉시(미정)	제주	5/7~5/9	제주시(미정)
광주전남	5/27~5/29	광주여성발전센터	계	25회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과정

(음영이 처리된 ★는 오후 1시 30분 교육시작)

지회교육	기간	교육장소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남동	3/10~3/12	협회 중앙회	충남	5/27~5/29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남서	*3/19~3/21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충북	4/22~4/24	청주중소기업지원센터
	북동	4/28~4/30	협회 중앙회	전북	3/18~3/20	전주중소기업지원센터
	북서	5/7~5/9	협회 중앙회	경기북	5/27~5/29	구리시(미정)
	남동	5/26~5/28	협회 중앙회	대구	6/11~6/13	대구문화예술회관
	남서	6/30~7/2	협회 중앙회	경북서	4/1~4/3	구미1대학
경기	북동	*7/16~7/18	협회 중앙회(1시30분시작)	부산	3/4~3/6	사학 연금관리공단
		5/20~5/22	군포문화예술회관		6/17~6/19	사학 연금관리공단
		6/17~6/19	군포문화예술회관	경남	4/23~4/25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인천	5/7~5/9	인천건설기술교육원	경기남	3/11~3/13	수원농민회관	
광주전남	5/14~5/16	광주여성발전센터		6/10~6/12	수원농민회관	
대전	3/4~3/6	대전상공회의소	울산	4/28~4/30	울산 가족문화센터	
	7/2~7/4	대전상공회의소	계	25회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가·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교육준비물 및 교육시간표

가. 교육준비물 : 신분증 및 필기도구(※신분증 미지참시 입실불가)

나. 교육시간

◎ 일반 교육일정 교육시간표

- 교육1일차, 2일차 : 08:40~18:00(08:40분까지 출석확인 후 입실)
- 교육3일차 : 09:00~13:30

◎ 음영(★)이 처리된 교육일정(서울 교육일정)

- 교육1일차 : 13:40~18:00(13:30분까지 출석확인 후 입실)
- 교육2일차, 교육3일차 : 09:00~18:00

6. 교육장 가는길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전력기술교육원 클릭 또는 접수시 문의

-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중앙회 : 지하철 사당역(2, 4호선)하차후 6번 출구에서 낙성대 방향으로 약 400m 진행(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

- ◎ 1인당 교육비: 76,000원(비합숙, 증식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8. 교육접수

가. 인터넷 접수

- ◎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에서 온라인 민원업무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후 접수
- ◎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협회로 송부할 필요 없음)
 - ※ 회원관리규정에 의한 정상회원 및 당해 업등록보유기술인력 전원이 정상회원인업체만 온라인 민원업무 서비스를 이용가능 함.
 - ※ 카드 결제시에는 별도로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나. FAX접수

- ◎ 교육신청서와 교육비 은행입금영수증을 해당지회로 FAX 전송
 - ※ 교육비 납부 : 교육을 받고자하는 지역의 해당지회 은행계좌로 입금(은행계좌번호 및 FAX 번호 : 교육신청서 하단 참조)

다. 직접접수

- ◎ 중앙회 및 해당지회 방문 접수(교육장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실시 당일에 드리며, 별도의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지회에 교육접수 할 때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십시오.

9. 교육 취소 및 변경

가. 교육 취소에 따른 위약금

- ◎ 교육신청자가 교육실시 2주전에 신청교육의 취소통보와 함께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비의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전액환불할 수 있으며, 2주경과(교육실시 13일 전부터) 또는 이미 신청한 교육이 실시된 이후의 경우 교육취소와 함께 교육훈련비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신청 당해연도까지는 납부한 교육훈련비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함.
- ◎ 환불신청서는 홈페이지 전력기술교육원에서 다운로드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협회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팩스[02)581-4256] 전송

나. 교육 변경

- ◎ 교육개시 5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0. 기 타

- ◎ 교육 중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교육 수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교육에 성실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05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제65호 안내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3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 전력신기술 지정

신기술명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기술)

- ◎ 지정번호 : 제65호
- ◎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주)
 - 대표자 : 권용학,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0001393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6

보증채무 약정갱신 안내

1. 보증채무약정갱신 안내

출자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보증업무를 이용중인 회원사중 보증채무약정 만료일이 3월에 다가오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므로 대상업체께서는 보증채무약정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년의 경우 매년 3월경에는 일시에 많은 회원사가 보증채무약정을 갱신 및 신규 체결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평상시보다 지연처리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약정갱신을 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2. 보증채무약정업무

약정기간내(3년기준)에 약정 한도금액내에서 수시 보증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때, 1~3개 출자업체가 연대보증한 한도거래용보증채무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대보증인의 자격

구분	연대	보증인의 자격
이행보증	입찰, 계약, 차액, 하자	1개업체이상(약정인 출자좌수의 80%이상인 업체)
지급보증	선금급, 대출	2~3개업체이상(약정인 출자좌수의 50%이상인 업체)

※ 연대보증한도 : 다른 업체에 연대보증을 서 줄 수 있는 한도는 보증업무의 경우 금액과 좌수에 상관없이 횟수로 5회까지만 서줄 수 있습니다.

4. 약정서 작성방법

- ① 약정인 : 법인(개인업체는 사업장)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고 법인(개인업체는 개인)인감 날인
- ② 약정인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 대표자 개인주소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 ③ 연대보증인
 - 법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법인주소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 개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및 개인인감 날인

④ 제출서류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약정인	1. 약정서(협회서식) 1부 2. 법인 및 사용인감 제출서 (협회서식) 2부 3. 사용인감제출서(협회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7.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8. 양도증서	1. 약정서(협회서식) 1부 2. 개인 및 사용 인감제출서(협회서식) 2부 3. 사용인감제출서(협회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7. 양도증서
연대보증인	5, 7, 8 항	4, 5, 6, 7 항

5. 이행·지급보증업무 안내

◎ 보증업무

- 출자회원사의 전기설계·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의무이행 및 지급보증 등에 필요한 보증

◎ 보증의 한도

- 거래별 이용한도액 산출 = 좌당이용지분액 × 출자좌수 × 해당배수

구분	종류	이용 배 수		비고
		종전	변경('08. 1. 1일부터)	
이행보증	입찰보증	5배 이내	24배 이내	좌당 이용지분액은 전년도말 결산지분액을 적용함.
	계약보증(차액보증포함)	15배 이내		
	하자이행보증	4배 이내		
지급보증	선금급지급보증	5배 이내	5배 (2개 업체 이상) 12배 (3개 업체 이상)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규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08. 01. 01 신규 (약정갱신 업체 포함) 약정 체결업체부터 변경 이용배수를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종전이용배수를 적용함.

◎ 보증수수료

보증종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이행보증	선금급보증
수수료율	1000원(건당)	0.35%	0.60%	0.40%	0.50%

- 기본수수료 1,000원

07

2008년 적용 표준품셈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로등공사 · 에이밍작업 품 상향조정, 접지클램프 · 고조반사판 청소 품 신설

-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의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총70개 항목이 제 · 개정되었으며, 이중 “조류정전예방 선로순시” 등 11개 항목이 새로이 신설 추가 제정되었으며,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 등 59개 항목이 기본품 증가, 일부품 추가,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주요 제 · 개정 내용으로는 가로등공사의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에 대한 품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며, 또한 가로등공사 시 기존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적용 기준이 없어 계상 받지 못하고 있던 국기봉 및 배너걸이 설치에 대한 품을 새로이 신설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 그 밖에 조류정전예방을 위한 선로순시와 조류등지 철거공사를 현실화 하였으며, 접지클램프 설치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 마련 및 고조도반사판에 대한 청소 품을 제정 등 품셈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이룩하였다.
- 또한 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적용 표준품셈 제 · 개정 내용에는 없지만 전기공사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한전에서 개정 추진한 전선압축접속(사선 및 활선) 50% 삭감 추진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현행유지 시킴에 따라 배전공사에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선압축접속에 대한 공사비 삭감분을 보전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금번 표준품셈 제 · 개정으로 인하여 2008년 전기공사업계 연간 실적이 상당부분 상승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 · 개정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기협회(<http://www.electricity.or.kr>)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http://www.keea.or.kr>) 및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판 판매 안내

한전에서는 배전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기위해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개정판을 만들고 감리회원 및 전력기술인들에게 보다 많이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협회에 판매권을 주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정판매를 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책자의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책자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개정내용을 쉽게 가재할 수 있도록 첩편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향후 판매 및 발송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전과 업무 협의 완료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게재내용**
 -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절차
 - 배전공사 감리 검측기준
 - 감리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배전감리 수행관련 각종 서식 등
- **판 매 가 :** 3만원(예정)
- **구 입 처 :** 협회 중앙회(우편발송 예정)
- **구매신청 :** 제도연구실 손영선 (TEL. 02-2182-0714, FAX. 02-581-4257)
- **신청기한 :** '08년 2월 29일까지
- **발송방법 :**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발송 예정



주문처(자)	주 소	연락처	부수

*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위 내용을 게재하여 제도연구실(FAX. 02-581-425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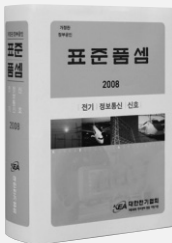
2008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개최

- 올해 5번째로 개최되는 「2008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Fire & Safety EXPO KOREA 2008)」가 소방, 방재, 안전 전 분야를 통합한 종합안전박람회로서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개최된다.
- 기존 소방방재 분야에서 전기, 석유화학, 철도, 가스, 지진, 항공, 설비 등 전시품목 및 참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20개국에서 약 250개의 우수 업체와 40개국에서 약 70,000여명의 구매력 높은 바이어 및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소방방재청, 대구광역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행사에 산업자원부, 조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18개 기관단체가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설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및 교육원, 한국가스공사, 전력기술인협회 등 신규로 참가하고 관련 대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또한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 소방방재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첨단 선진기술 및 911 테러사태 등을 소개할 국제소방방재심포지엄을 비롯하여 신제품 발표 및 시연회, 학술세미나 및 논문발표회, 시민안전체험 및 소방장비전시 등이 동시에 개최되어 최신 기술정보와 시장동향 정보 및 볼거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올해에는 전기화재관련 세미나 및 교육행사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엑스포의 상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www.fireexpo.co.kr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다. 사무국은 참관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도를 마련했는데 협회나 단체를 통해 30인 이상이 참관 희망 시에 단체버스를 제공하며 참가업체 추천을 받은 참관객에게 특급호텔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10

2008년도 개정판 「전기·정보통신·신호 표준품셈」발간 안내



규격 : 국판(25절) / 1,376면
양장 / 정가 : 35,000원

2008년판 전기·정보통신·신호 표준품셈은 발주기관과 시행처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였으며, 현실화된 문구정리, 용어·적용기준 정비,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신설공량은 물론 이전에 적용되던 종별 노임단가를 시중단가로 일원화하여 적용, 제정하였으며 인력 품 위주의 구식화된 품을 기계화된 품으로 대폭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지중 XLPE 케이블 조립식 접속, 3상 345kV 100MVAR 분로리액터 설치 등 11개 조항을 제정하고, 보수슬리브 설치 등 59개 조항을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판을 발간 보급합니다.

주문처	부수	주소 및 연락처	비고(입금자명/송금일)

☐ 도서대금을 송금(외환은행 631-000360-437) 하신 후 입금증서에 받으실 주소, 전화번호 및 도서명을 명기하신 후 대한전기협회
TEL: (02)3393-7691~4, FAX: 3393-7699로 연락주시면 태백로 우송해 드립니다.